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18 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: 박충권·박성훈·김 건

엄태영 • 박정훈 • 백종헌

김태호 · 김성원 · 이인선

최수진 · 진종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별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,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 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, 우선 구

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,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(안 제17조의5).

법률 제 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"를 "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(이하 이 조에서 "생산품"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 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공공기관의 장"을 "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"으로, "사업주가 생산한 물품"을 "생산품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우선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연도 구매 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구매 실적 및 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5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

- 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① 통일 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 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할 것
 -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 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
 - ②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 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① ---------사업주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(이하 이 조에서 "생산품"이라 한다)의 우선 구 매 등---.
 - 1. 북한이탈주민인 경우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 용하는 경우
 - (2) ----------공공기관(이 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-----생
 -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우 선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 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년도 구매 실

<u>적과 해당연도 구매 계획을 통</u> 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